

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4. 26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19호로 2024년 4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과학문화이용권 사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이
이용자 본인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이용권의 사용 범위
를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
자 함.

3. 주요내용

이용권 사용 범위에 동반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(안 제9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교육기본법」,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라. 입법예고(2024. 3. 7.~ 3. 27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9조(이용권의 사용 등)에서는 과학문화기관의 입장료 및 프로그램 비용을 과학문화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 대상을 “이용권을 발급받은 본인”에서 대상자의 “동반 가족”까지 확대함.
- 검토 결과
 - 본 조례는 관내 아동·청소년 과학문화 이용권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48회 임시회¹⁾에서 의결된바, 현재 시범운영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,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.

<2024년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사업개요>

- 지원대상: 영등포구 거주 초등학생·중학생 및 7세 이상 15세 이하 청소년 약 2만 명
- 지원금액: 연간 1인 취약계층 5만원, 일반학생 3만원
- 신청방법: 온라인(구홈페이지) 및 현장(동주민센터) 신청
- 선정방법: 자격조건(거주 및 연령정보)확인 후 총족 시 선정(예산범위 내)
- 지급방법: 과학문화이용권 카드(포인트 충전식) 발급
- 사 용 처: 수도권 국·공립 과학관 등 중 업무협약 체결된 기관
- ※ '24. 4월 기준 기관과 업무협약 中
- 소요예산: 598백만원(이용권 지원금: 565백만원, 운영비: 33백만원)

1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」(전부개정. 2023.11.9.)

- 이번 일부개정은 이용권을 발급받는 “대상자”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하는 “동반 가족”까지 확대하여 과학문화이용권의 활성화를 제고하고,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- 특히, 영등포구 내에는 과학교육 관련 기관이 없어 과학문화이용권의 사용처가 관외에 있는 것을 참고할 때, 초등학교 저학년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. 따라서 일부개정을 통해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도 입장료 및 프로그램 비용으로 과학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.
- 또한, “과학문화이용권”은 포인트 충전식 카드로 1인 한도(취약계층: 5만 원, 일반학생: 3만 원)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에, 이번 개정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아님.
- 다만, 과학문화기관 등 사용처에서 입장료를 무인 발급기로 결제하는 경우, 가족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이용권 발급 대상자와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를 단순히 “동반 가족”으로 한정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임. 따라서, 동 개정안의 “동반 가족”을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“보호자 또는 동반자” 등으로 범위를 넓혀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임.

참 고 자 료

1 교육기본법

제22조(과학·기술교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·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2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0. 그 밖에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
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4. 26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20호로 2024년 4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상기념사업운
영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정, 보완하고 위촉위원의 성비 구성 조
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띄어쓰기 등 문장 오류 정정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제1항)
- 나. 구-사업회간 위원회 구성비율 조항 삭제(안 제6조제1항)
- 다. 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업회의 회장으로 정정(안 제6조제2항)
- 라. 구상선생기념사업회의 위촉위원 추천 조항 신설(안 제6조제3항)
- 마.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 초과 제한규정 신설(안 제6조제4항)
- 바. 수당을 지급받는 운영위원의 범위 오류 정정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3. 7.~ 3. 27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상시인 기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맞춰 정비하고,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6조제1항(위원회의 구성)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, 현재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 위원현황을 반영하고자 구와 (사)구상선생기념사업회(이하 ‘사업회’라 한다) 간의 구성 비율 문구를 삭제함.
- 안 제6조제2항~제3항(위원회의 구성)에서는 본 조례 제2조(주최)에 따라 “구”와 “사업회”가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있는바,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사업회의 “회장”으로 변경하고, 사업회의 위원 추천 규정을 마련하여 “구”와 “사업회”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안 제6조제4항(위원회의 구성)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1)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

정 성별 인원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.

- 안 제11조(수당 등)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의 범위를 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우리 구(區)의 대표 문인인 구상(具常) 시인을 기리고 구상 문학상 제정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구(區) 문학 발전을 제고하고자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2)에 근거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」(제정. 2009.6.18.)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▲구민문학상 ▲구상문학상 ▲구상한강백일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, 올해 ▲구상 시비(詩碑) 주변 태양광 조명등 설치 ▲‘구상-이중섭 우정의 명예도로명’ 부여 등을 시행할 예정임.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상시인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,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오류를 정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짐.

1)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2)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참 고 자 료

1 문화예술진흥법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2 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